

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18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18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18.(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건설과장 이병인)

가. 제안이유

-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연 8% 이자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 6% 이자율로 하향 조정하였음.
- 이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중 분할납부 이자율을 부산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8%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(현재 연 6%로 하향조정) 적용으로 개정코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8%에서 연 6%로 조정 시행함으로써 대민 부담경감과 위민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,
- 특히 부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단서규정과 동일한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